

|   |      |
|---|------|
| 선 | 기관의장 |
| 람 |      |

# 구 보

● 조 례

|  |    |
|--|----|
| 제1487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 제1488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 제1489호 :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 제1490호 : 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
| 제149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
| 제1492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
| 제149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
| 제1494호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9 |
| 제1495호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4 |
| 제1496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27 |
| 제149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2 |
| 제1498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34 |
| 제1499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6 |
| 제1500호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7 |

● 고 시

|                                   |    |
|-----------------------------------|----|
| 제2019-154호 : 주택건설사업자 위반업체 행정처분 고시 | 41 |
|-----------------------------------|----|

● 공 고

|  |    |
|--|----|
| 제2019-95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전문위원) 공무원 임용계획 공고                | 42 |
| 제2019-975호 :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56 |
| 제2019-976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57 |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    |  |  |  |  |  |  |  |  |  |  |
|----|--|--|--|--|--|--|--|--|--|--|
| 공람 |  |  |  |  |  |  |  |  |  |  |
|----|--|--|--|--|--|--|--|--|--|--|



조        례

서울특별시 중구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87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을 삭제한다.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하고,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는 매년1회,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심의)</p> <p>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③&lt;신설&gt;</p> <p>③임시회에서는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 <p>제5조(심의)</p> <p>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③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는 매년1회,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한다.</p> <p>④(현행 제3항과 같음)</p>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한정되어 있는 조항을 ‘매년 1회,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지 못할 경우 제2차 정례회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행정사무처리의 적법성 및 적절성 등에 대한 감사를 미실시하는 초유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의(제5조)
  - (제1항)“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를
  - ⇒ (제1항)“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로 변경함
  - (제3항)“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한다.”는 조항을 신설함.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88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28조의 제목 “(대부료의 감면)”을 “(대부료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  
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에 제12호 및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략)</p> <p>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1. ~ 11.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 <p>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br/>-----<br/>---</p> <p>1. ~ 11. (현행과 같음)</p> <p><u>12.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u></p>   |
| <p>제28조(대부료의 감면) ①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 <p>제28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p> <p>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p> <p>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p> <p>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p>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9324호, 2019.6.5.시행)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위해 대부료의 요율 감면(5%→1%)(제25조)
-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자활 및 마을기업의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위해 대부료 감면(5%→2.5%)(제28조)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89호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③「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4종)” 중 종목란의 나호의 “(1) 세목별과세(납세)증명”을 “(1) 세목별과세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수수료의 감면)<br>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br>1. ~ 10. (생략)<br>11.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납세)증명<br>12.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납세)증명<br><br>② 삭제(1997.1.18.)<br><br><div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div><br><br><br><br><div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div> | 제6조(수수료의 감면)<br>① (현행과 같음)<br><br>1. ~ 10. (현행과 같음)<br><삭 제><br><br><삭 제><br>②(현행과 같음)<br><br>③「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br><br>④「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를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및 우리 구 성실납세자 중 대상자(이하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세목별과세 증명서 수수료 감면 규정을 100% 면제에서 50%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도록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세목별과세증명서 수수료 감면을 개정
  - 전액 면제 규정 삭제(제6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삭제)
  - 50% 감면 규정 신설(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나.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관련 별표 개정
  - 별표 수수료 명칭 중 ‘세목별과세(납세)증명’을 ‘세목별과세증명서’로 명칭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90호

### 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최소화하여야 한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중 “약국 또는 구 보건소”를 “약국, 구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협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를 “수거에 협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관한다”를 “보관에 협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 폐기물관리부서(청소행정과)에서는 약사회, 구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수집·운반된 폐의약품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속히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p> <p>② 구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조(불용의약품의 수집·운반·처리)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p> <p>② 구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한다.</p> <p>③ 구청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소각하여야 한다.</p> | <p>제5조(구민의 책무) ① -----<br/>-----<u>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u>약국, 구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u>-----<u>협조</u><br/><u>하여야 한다.</u></p> <p>제6조(불용의약품의 수집·운반·처리) ① -----<br/>-----<br/>-----<br/>-----<u>수거에 협조</u><br/><u>한다.</u></p> <p>② -----<br/>-----<br/>----- <u>보관에 협조한다.</u></p> <p>③ <u>구청 폐기물관리부서(청소행정과)에서는 약사회, 구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수집·운반된 폐의약품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속히 소각처리하여야 한다.</u></p>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동주민센터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계획」 추진 등 불용의약품 수거처리사업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있어 「서울특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의약품 수거용기 비치 장소에 “동 주민센터”를 추가 (안 제5조제2항)

나. 구민, 약국 및 약사회를 수행의무자에서 협조자로 변경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다. 폐의약품 운반 및 처리 담당부서를 명시(제6조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9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정홍보”를 “구정과 지역 홍보”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실비보상 등) ①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개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출연·촬영·편집 등) 참여자에게 한 작품(콘텐츠)당 최대 20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콘텐츠 제작 참여자 선정에 있어 중구민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8조(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및 구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lt;신설&gt;</p> <p>②·③ (생략)</p> <p>&lt;신설&gt;</p> | <p>제8조(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 ① -----<br/>----- 구정과 지역 홍보-----<br/>-----.</p> <p>1. 2. (현행과 같음)</p> <p>3.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2(실비보상 등) ①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개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출연·촬영·편집 등) 참여자에게 한 작품(콘텐츠)당 최대 20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p> <p>③ 콘텐츠 제작 참여자 선정에 있어 중구민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p>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주민이 참여하는 콘텐츠 제작을 통하여 주민 소통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확대하기 위하여 활동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정과 지역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제8조제1항)
  - “구정홍보”를 “구정과 지역 홍보”로 변경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신설(제8조제1항제3호)
  -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 주민 참여 유도·확대를 위한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제8조의2)
  -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경비 지급, 최대 지급액 한정, 참여자 선정에 중구민 우선 선발 가능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92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6조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b>법 제16조제3항에 따라</b>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할 수 있다.</p> <p>1.~5.(생략)</p> | <p>제4조(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p> <p>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할 수 있다.</p> <p>1.~5.(현행과 같음)</p> |
| <p><b>&lt;신 설&gt;</b></p>   | <p>②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b>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b></p>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급 조항 신설(제4조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93호

### 서울특별시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한다.

1. 주차장 이용 요금은 아래와 같다.

가. 일일 시간 주차 : 5분당 400원을 기본료로 징수하고,

30분 초과 시 매10분 당 1,000원으로 징수한다.

나. 종일요금은 일일 20,000원으로 한다.

다. 월 정기주차 요금은 월 250,000원으로 한다.

라.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내 시설 사용료 (제19조 관련)

| 연번 | 시설명              | 면적                   | 1회 이용시간 | 금액         | 비고 |
|----|------------------|----------------------|---------|------------|----|
| 1  | 교육 강당<br>(지하1층)  | 210.23m <sup>2</sup> | 반일      | 250,000원   |    |
|    |                  |                      | 전일      | 500,000원   |    |
| 2  | 기획 전시실<br>(지하2층) | 310.63m <sup>2</sup> | 전일      | 500,000원   |    |
| 3  | 소강당<br>(지하2층)    | 112.87m <sup>2</sup> | 반일      | 170,000원   |    |
|    |                  |                      | 전일      | 250,000원   |    |
| 4  | 콘솔레이션홀<br>(지하3층) | 966.45m <sup>2</sup> | 전일      | 2,500,000원 |    |
| 5  | 하늘광장<br>(지하3층)   | 934.65m <sup>2</sup> | 전일      | 2,000,000원 |    |

- ※ 1. 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사용시간은 전일시간(09:00~18:00), 반일시간(09:00~13:00 / 14:00~18:00 선택)임
2. 1회 이용 기준시간 미만 사용한 경우 1회 이용으로 적용함.
3. 토·일·공휴일 및 야간 시간(19:00~22:00) 대관 시 대관료에 30%를 할증함.
4.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현 행  |                  |         |         |          |    | 개 정 안  |                  |         |         |          |    |
|--|------------------|---------|---------|----------|----|--|------------------|---------|---------|----------|----|
| [별표1]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내 시설 사용료  |                  |         |         |          |    | [별표1]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내 시설 사용료  |                  |         |         |          |    |
| 연번   | 시설명              | 면적      | 1회 이용시간 | 금액       | 비고 | 연번   | 시설명              | 면적      | 1회 이용시간 | 금액       | 비고 |
| 1  | 교육 강당<br>(지하1층)  | 210.23㎡ | 반일      | 250,000원 |    | 1  | 교육 강당<br>(지하1층)  | 210.23㎡ | 반일      | 250,000원 |    |
|  |                  |         | 전일      | 500,000원 |    |  |                  |         | 전일      | 500,000원 |    |
| 2  | 기획 전시실<br>(지하2층) | 310.63㎡ | 전일      | 500,000원 |    | 2  | 기획 전시실<br>(지하2층) | 310.63㎡ | 전일      | 500,000원 |    |
| 3  | 소강당<br>(지하2층)    | 112.87㎡ | 반일      | 170,000원 |    | 3  | 소강당<br>(지하2층)    | 112.87㎡ | 반일      | 170,000원 |    |
|  |                  |         | 전일      | 250,000원 |    |  |                  |         | 전일      | 250,000원 |    |
| ※ 1. 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사용시간은 전일시간(09:00~18:00), 반일시간(09:00~13:00 / 14:00~18:00 선택)임<br>2. 1회 이용 기준시간 미만 사용한 경우 1회 이용으로 적용함.<br>3. 토·일·공휴일 및 야간 시간(19:00~22:00) 대관 시 대관료에 30%를 할증함.<br>4.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         |         |          |    | ※ (현행과 같음)   |                  |         |         |          |    |
| [별표5] 주차 이용요금<br>1. 주차장 이용 요금은 아래와 같다.<br>가. 일일 시간 주차 : 5분당 400원을 기본료로 징수하고, 30분 초과 시 매 10분 당 1,000원으로 징수한다.<br>나. 월 정기주차 요금은 월 250,000원으로 한다.   |                  |         |         |          |    | [별표5] 주차 이용요금<br>1. 주차장 이용 요금은 아래와 같다.<br>가. (현행과 같음)<br><u>나. 종일요금은 일일 20,000원으로 한다. &lt;신설&gt;</u><br>다. 월 정기주차 요금은 월 250,000원으로 한다.<br><u>라.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lt;신설&gt;</u> |                  |         |         |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의 이용접근성을 증대시켜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고하고, 박물관 운영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박물관 시설 사용범위 확대(별표1)
  - 박물관 이용자를 위한 문화 행사 및 전시 대관 시설 추가  
(콘솔레이션홀, 하늘광장)
- 주차장 이용요금표 개정(별표5)
  - 주차장 이용 주민 편익을 증대하고자 지역 실정에 맞춰  
감면 운영 가능한 내용과 종일요금(일 20,000원)을 신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94호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5]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

| 연번 | 종류                        | 규격            | 수수료    |
|----|---------------------------|---------------|--------|
| 1  | 가방류                       | 가로 50cm 이상    | 3,000  |
|    |                           | 가로 50cm 미만    | 2,000  |
| 2  | 가스레인지 받침                  | 모든 규격         | 2,000  |
| 3  | 가스오븐레인지                   | 높이 1m 이상      | 4,000  |
| 4  | 간판(칠판)                    | 40cm×100cm 이상 | 6,000  |
|    |                           | 40cm×100cm 미만 | 3,000  |
| 5  | 거울                        | 높이 50cm 이상    | 2,000  |
|    |                           | 높이 50cm 미만    | 1,000  |
| 6  | 건조대                       | 전체            | 2,000  |
| 7  | 고무통                       | 지름 100cm 이상   | 5,000  |
|    |                           | 지름 50cm 이상    | 3,000  |
|    |                           | 지름 50cm 미만    | 2,000  |
| 8  | 공기청정기                     | 대형(사업장용)      | 5,000  |
| 9  | 교자상                       | 모든 규격         | 2,000  |
| 10 | 금고                        | 1m 이상         | 10,000 |
|    |                           | 1m 미만         | 7,000  |
| 11 | 김치냉장고                     | 130ℓ 이상       | 5,000  |
|    |                           | 130ℓ 미만       | 3,000  |
| 12 | 김칫독                       | 응기 제품 제외      | 5,000  |
| 13 | 깨진 유리                     | 베란다유리 크기 미만   | 2,000  |
|    |                           | 베란다유리 크기 이상   | 3,000  |
| 14 | 나무 묶음                     | 직경 40cm       | 2,000  |
| 15 | 나무판자                      | 개당(2m 이하)     | 1,000  |
| 16 | 난로                        | 모든규격          | 3,000  |
| 17 | 냉장고                       | 업소용           | 15,000 |
|    |                           | 500ℓ 이상       | 10,000 |
|    |                           | 300ℓ 이상       | 7,000  |
|    |                           | 300ℓ 미만       | 4,000  |
| 18 | 다리미 판                     | 모든 규격         | 1,000  |
| 19 | 돗자리, 장판                   | 3.3㎡당         | 1,000  |
| 20 | 런닝머신                      | 모든 규격         | 18,000 |
| 21 | 마네킹                       | 전체            | 3,000  |
| 22 | 목욕탕수건함                    | 모든 규격         | 1,000  |
| 23 | 문갑                        | 모든 규격         | 3,000  |
| 24 | 문짝                        | 개당            | 2,000  |
| 25 | 물탱크(저수조)<br><FRP 또는 플라스틱> | 15인승 이상       | 12,000 |
|    |                           | 15인승 미만       | 7,000  |
| 26 | 밥상                        | 5인용 이상        | 4,000  |
|    |                           | 4인용           | 2,000  |
|    |                           | 3인 이하         | 1,000  |
| 27 | 배기 후드                     | 모든 규격         | 2,000  |
| 28 | 변기                        | 좌변기(소형)       | 5,000  |
|    |                           | 양변기           | 10,000 |
| 29 | 병풍                        | 2폭당           | 1,000  |

| 연번 | 종류        | 규격              | 수수료    |
|----|-----------|-----------------|--------|
| 30 | 보일러       | 16,000cal/h 이상  | 12,000 |
|    |           | 16,000cal/h 미만  | 8,000  |
| 31 | 보일러 기름 탱크 | 모든 규격           | 2,000  |
| 32 | 보행기       | 모든 규격           | 2,000  |
| 33 | 복사기       | 모든 규격           | 10,000 |
| 34 | 분말 소화기    | 가정용 10kg 미만     | 3,000  |
| 35 | 비키니(간이)옷장 | 모든 규격           | 3,000  |
| 36 | 서랍장       | 5단 이상           | 4,000  |
|    |           | 4단 이하           | 2,000  |
| 37 | 선풍기       | 날개 50cm 이상, 영업용 | 4,000  |
| 38 | 세단기       | 모든 규격           | 5,000  |
| 39 | 세면대       | 모든 규격           | 3,000  |
| 40 | 세탁기       | 모든 규격           | 4,000  |
| 41 | 소파        | 4인용 이상          | 10,000 |
|    |           | 3인용             | 8,000  |
|    |           | 2인용             | 6,000  |
|    |           | 1인용             | 3,000  |
| 42 | 스피커       | 개당              | 1,000  |
| 43 | 식기 건조기    | 모든 규격           | 2,000  |
| 44 | 식기 세척기    | 모든 규격           | 5,000  |
| 45 | 식탁(테이블)   | 6인용 이상          | 5,000  |
|    |           | 5인용 이하          | 4,000  |
|    |           | 4인용 이하          | 3,000  |
| 46 | 신발장       | 높이 120cm 이상     | 3,000  |
|    |           | 높이 120cm 미만     | 3,000  |
| 47 | 쌀통        | 모든 규격           | 3,000  |
| 48 | 쓰레기통      | 사무실 · 옥외용       | 2,000  |
|    |           | 가정용             | 1,000  |
| 49 | 짱크대       | 60cm 1개당        | 3,000  |
| 50 | 아기 침대     | 모든 규격           | 4,000  |
| 51 | 액자        | 대형(넓이 5㎡ 이상)    | 2,000  |
|    |           | 소형(넓이 5㎡ 미만)    | 1,000  |
| 52 | 어항        | 1m 이상           | 6,000  |
|    |           | 1m 미만           | 4,000  |
| 53 | 에어컨       | 254㎡ 이상         | 8,000  |
|    |           | 66㎡ 이상          | 5,000  |
|    |           | 66㎡ 미만          | 3,000  |
| 54 | 오디오       | 대형              | 5,000  |
| 55 | 오디오 장식장   | 모든 규격           | 3,000  |
| 56 | 자석 매트     | 모든 규격           | 2,000  |
| 57 | 온풍기       | 254㎡ 이상         | 8,000  |
|    |           | 66㎡ 이상          | 5,000  |
|    |           | 66㎡ 미만          | 3,000  |
| 58 | 오락기       | 대형(업소용)         | 8,000  |
| 59 | 오르간       | 모든 규격           | 5,000  |
| 60 | 옷걸이       | 모든 규격           | 2,000  |
| 61 | 목조        | 모든 규격           | 7,000  |

1. 2.

| 연번 | 종류              | 규격                  | 수수료    |
|----|-----------------|---------------------|--------|
| 62 | 유모차             | 모든 규격               | 2,000  |
| 63 | 유아용 목마          | 모든 규격               | 1,000  |
| 64 | 유아용 자동차         | 모든 규격               | 2,000  |
| 65 | 의자              | 일반 의자(4인용 이상)       | 5,000  |
|    |                 | 일반 의자(3인용)          | 4,000  |
|    |                 | 일반 의자(2인용)          | 3,000  |
|    |                 | 일반 의자(1인용)          | 2,000  |
| 66 | 이불(요, 담요)       | 1채당                 | 2,000  |
| 67 | 인형, 장난감 류       | 개당                  | 1,000  |
| 68 | 자동판매기           | 대형(음료·커피·담배)        | 15,000 |
|    |                 | 소형                  | 5,000  |
| 69 | 자전거             | 성인용                 | 5,000  |
|    |                 | 아동용 이륜              | 4,000  |
|    |                 | 유아용 삼륜              | 3,000  |
| 70 | 재봉틀             | 모든 규격               | 3,000  |
| 71 | 재봉틀대            | 모든 규격               | 6,000  |
| 72 | 장롱              | 30cm당               | 3,000  |
| 73 | 장식장             | 모든 규격               | 4,000  |
| 74 | 전기장판(담요)        | 모든 규격               | 2,000  |
| 75 | 전자 오르간(디지털 피아노) | 모든 규격               | 4,000  |
| 76 | 정수기             | 20 l 이상             | 5,000  |
| 77 | 진열대             | 모든 규격               | 3,000  |
| 78 | 찬장              | 1칸                  | 3,000  |
| 79 | 책꽂이(책장)         | 4단 이상               | 3,000  |
|    |                 | 3단 이하               | 3,000  |
|    |                 | 2단 이하               | 2,000  |
|    |                 | 90cm×180cm 이상       | 10,000 |
|    |                 | 90cm×180cm 미만       | 6,000  |
| 80 | 책상              | 양수                  | 7,000  |
|    |                 | 편수                  | 4,000  |
|    |                 | 컴퓨터 또는 서랍없는 책상      | 3,000  |
| 81 | 가림막             | 높이 1m 이상            | 3,000  |
|    |                 | 높이 1m 미만            | 2,000  |
| 82 | 청소기             | 핸디형(로봇 청소기 제외)      | 4,000  |
| 83 | 침대              | 2인용                 | 15,000 |
|    |                 | 2인용 매트리스만           | 8,000  |
|    |                 | 1인용                 | 10,000 |
|    |                 | 1인용 매트리스만           | 5,000  |
| 84 | 카펫              | 3.3m <sup>2</sup> 당 | 2,000  |
| 85 | 캐비닛             | 모든 규격               | 4,000  |
| 86 | 탁자              | 10인 이상              | 8,000  |
|    |                 | 3인 이상               | 5,000  |
|    |                 | 2인 이하               | 3,000  |
|    |                 | 차 탁자                | 2,000  |
| 87 | 텔레비전            | 42인치 이상             | 6,000  |
|    |                 | 42인치 미만             | 3,000  |
| 88 | 텔레비전 받침         | 모든 규격               | 3,000  |

| 연번 | 종류     | 규격             | 수수료    |
|----|--------|----------------|--------|
| 89 | 파티션    | 1칸당            | 2,000  |
| 90 | 피아노    | 모든 규격          | 15,000 |
| 91 | 항아리    | 옹기 제품          | 2,000  |
| 92 | 헬스 기구  | 5kg 이상         | 6,000  |
|    |        | 5kg 이하         | 4,000  |
| 93 | 헬스 자전거 | 모든 규격          | 4,000  |
| 94 | 화분     | 대형(직경 50cm 이상) | 2,000  |
|    |        | 소형(직경 50cm 미만) | 1,000  |
| 95 | 파일 캐비닛 | 4단 이상          | 3,000  |
|    |        | 3단 이하          | 2,000  |
| 96 | 화장대    | 모든 규격          | 3,000  |
| 97 | 환풍기    | 모든 규격          | 2,000  |
| 98 | 히터     | 모든 규격          | 2,000  |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배출되는 대형생활폐기물의 품목 및 규격이 다양화되어 이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수 수료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일부 개정(제32조제1항제2호 별표 5)
  - 가.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품목·규격 추가, 수수료 일부 상향
    - ☞ 75종 110개 → 98종 151개로 품목 추가 및 수수료 일부 상향
  - 나.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교정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95호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 2.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둘 수 있다.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
- ⑥ 그 밖의 위원 구성 및 자격, 직무 등에 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번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

- 1. 제7조제1항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기피를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쳤을 경우
- 2. 제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4. 사망, 질병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 3.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이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해당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은 제1항의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관계 법령에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가 규정된 경우는 이를 따른다.
-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우선 조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조치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빈틈없는 보호 조치 및 사후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임기 등(제3조~제7조)

1) 위원회 기능

-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 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 아동의 후견인 선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심의

2) 위원회 구성 : 10명 이내

- 위 원 장 : 구청장
-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원회 회의 및 우선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제8조~제9조)

□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의견청취, 회의록, 운영세칙 등(제10조~제13조)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96호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을 위한 교육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중구교육협의체란 지역내 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동아리, 관련 전문가 등 교육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중구 교육발전을 위해 모인 자발적 합의조직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명칭은 중구 교육혁신센터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을 1명 두며, 센터장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센터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사업의 발굴 및 육성
2. 인적·물적 교육 인프라 발굴 및 교육 네트워크 구축
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등)
4. 진로 및 진학을 위한 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다양한 교육컨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6. 지역교육인프라 역량교육을 통한 지역 교육력 강화
7.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8. 학부모 등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연계시스템 구축 및 협동조합 연계·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9.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대상)** ① 센터의 이용대상은 관내 학생 및 학부모 등 구민으로 한다.

- ② 단,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 ② 이용료 등은 공공성과 수입자 부담원칙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 등을 반환한다.

- 1. 센터의 이용을 신청한 사람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준하는 이용료 등 반환
- 2.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나 정전 등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이용료 등 전액 반환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등 전액 반환
- 4.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등 전액 반환

**제9조(중구교육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중구의 교육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및 교육현안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중구교육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필요시 중구교육협의체의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교육지원 및 협력에 관한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내 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중구교육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교육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 1.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 2.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육혁신센터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 1. 관계 공무원
  -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 3. 학교교육 전문가(학교장, 교사 등)
  - 4. 초·중·고등학교 교급별 학부모 대표
  - 5. 중구교육협의체 대표
  - 6. 청소년 대표
  - 7. 입시전문가
  - 8. 그 밖에 교육전문가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때
2.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연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혁신센터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이용료 등 (제7조 관련)

| 구 분   | 대 상              | 상한금액    |
|-------|------------------|---------|
| 이용료 등 |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 | 50,000원 |

## [별표 2]

## 이용료 등의 감면 기준 (제8조 관련)

| 구 분    | 대 상   | 비 고         |
|--------|---|-------------|
| 면 제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br>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br>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br>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해당 여부 증빙 필요 |
| 50% 감면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br>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개정이유

- 중구 지역 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과정 지원 및 교육혁신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 (제1조~제2조)
- 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제3조~제4조)
- 교육혁신센터의 기능(제5조)
- 이용대상, 이용료 등, 이용료 등의 반환(제6조~제8조)
- 중구교육협의체 구성 및 운영(제9조)
- 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10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등에 관한 사항 등(제11조~제17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9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사업실행 주체)”를 “(사업실행 주체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방과 후 아동교육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고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사회복지법인
- 2. 비영리법인
- 3.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 4. 개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이용의 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는 만 18세 미만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하되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4조(사업실행 주체) <u>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따른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u></p> <p>&lt;신 설&gt;</p> <p>제5조(이용의 대상) <u>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u></li> <li>2. <u>지역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u></li> <li>3. <u>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u></li> <li>4. <u>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u></li> </ol> | <p>제4조(사업실행 주체 및 위탁) ① <u>방과 후 아동교육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고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복지법인</li> <li>2. 비영리법인</li> <li>3. <u>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u></li> <li>4. 개인</li> </ol>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5조(이용의 대상) <u>지역아동센터 이용자는 만 18세 미만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하되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u></p>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통한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이용대상을 빈곤·학대·방임, 한부모 가정 등의 아동에서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실행 주체 및 민간위탁 조항 추가 (제4조)
-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의 확대 (제5조)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98호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이하“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제3조)
-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제4조)
-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제5조)
-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등(제6조)
- 수행기관에 관한 지도·감독(제7조)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99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호 중 “월 5만원”을 “월 7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산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보훈예우수당 및 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br>구청장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예우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 위문금 또는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br>1.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br>2. · 3. · 4. (생략) | 제10조(보훈예우수당 및 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br>-----<br>-----<br>-----<br>---.<br>1. 보훈예우수당 : 월 7만원<br>2. · 3. · 4. (현행과 같음)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보훈예우수당 인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보훈예우수당 관련 지원액 인상(제10조제1호)  
-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00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라 함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목욕탕, 독서실, 작은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파고라,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등

제4조(책무 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주민참여) ①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③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도시재생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도시재생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6.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감사원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 위반이나 도시재생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현장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11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 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 제13조(도시재생사업 시행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 전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2조의3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자정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 <p><b>1. 제개정이유</b></p> <p>○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중구 도시재생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고자 함.</p> <p><b>2. 주요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의 목적·정의 및 책무(제1~4조)</li> <li>○ 도시재생위원회(제5~7조)</li> <li>○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제8조)</li> <li>○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제9~10조)</li> <li>○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제11~12조)</li> <li>○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관리 및 지원, 환수 등(제13~16조)</li> </ul> |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54호

주택건설사업자 위반업체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처분일자 : 2020. 1. 1.
- 2. 처분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 3. 행정처분내역

| 등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처분일자                            |
|--------------------|----------|-----|---|----------------------------|---------|---------------------------------|
| 서울 주택<br>2015-0338 | (주)제이엘공영 | 김명권 | 서울 중구 퇴계로 447 2층<br>221호 (황학동, 황학아크로타워) | 변경신고지연<br>(2019.11.8.변경처리) | 영업정지 1월 | 2020. 1. 1.<br>~<br>2020. 1.31. |

4. 안내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주택과(☎02-3396-57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규정에 의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957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전문위원) 공무원 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전문위원) 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시험일정

가. 임용분야

| 임용직위     | 채 용 직 급     | 채용인원 | 근 무 지      |
|----------|-------------|------|------------|
| 구의회 전문위원 | 지방별정직(5급상당) | 1명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

나. 시험일정

| 원서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차 면접시험           | 면접 합격자발표     | 임용예정일        |
|--------------------------|-------------------|-------------------|--------------|--------------|
| '20. 1. 6.(월) ~ 1. 8.(수) | '20. 1. 13.(월) 예정 | '20. 1. 15.(수) 예정 | '20. 1월 중 예정 | '20. 2월 중 예정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 게시 및 개별 통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2.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연령은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 주소 및 성별은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임용조건에 해당하는 자

- ※ 관련분야 학위 : 법학, 행정학
- ※ 경력인정 범위 : 입법 및 법제연구·조사·분석, 예산, 결산관련 업무

### 3.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가. 보수 및 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나.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월~금)
- 복무기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 4. 시험방법

### 가. 1차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나. 2차 면접심사(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다. 면접 합격자 발표

- 중구 홈페이지에 공고
-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고 중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 1. 6.(월) ~ 1. 8.(수) (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중구청 행정지원과(구청 별관 옥상)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중구 수입증지 10,000원 인증
    - ※ 중구청 민원여권과(본관 1층)에서 근무 시간 내(09:00~18:00)인증
-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 자유롭게 기술하되,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추진계획,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다만, 경력증명서 상에 발급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 위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6.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는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하여 근무시간에 한해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및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지원과 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3396-4514)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① 전 화: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집전화, 휴대전화) 모두 기재
  - ② 주 소: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를 기재
  - ③ 학 력: 대학교 이하란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졸업·재학·수료·중퇴인 응시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 모두 기재
  - ④ 「\*」 표시가 되어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 ⑤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는 서울시 중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담당 창구에서 응시원서에 인증기 날인 후 접수

## << 주 의 사 항 >>

- ①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동일원판)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지원과 인사팀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안내받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별지 제2호 서식>

# 이 력 서

개인신상

|              |  |   |  |        |
|--------------|--|---|--|--------|
| 성명           | 한글   |   | 생년월일   |        |
|              | 한자   |   |  | ( 세 )  |
| 현 주소         |  |   |  |        |
| 현 소속         | 기관 및 부서 :<br>직위 :                                | 병역  | <input type="checkbox"/> 병역필 (기간 : )<br><input type="checkbox"/> 병역 미필<br><input type="checkbox"/> 병역 면제 |        |
| 연락처          | 자택   | 사무실   | 이동전화   | E-mail |
|              |  |   |  |        |
| 서류전형<br>평가항목 | 연간 소득액<br>[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br>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br>가입용) 참조] | 원   | 부양가족원 수<br>[주민등록 등본]   | 명      |
|              | 저소득계층<br>[국민기초생활수급 또는<br>차상위계층 증명서]              |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수급자<br><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br><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중구 전입일<br>[주민등록 초본]  | 년 월 일  |
|              | 취업지원·<br>보호대상자<br>[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input type="checkbox"/> 10% 가산대상<br><input type="checkbox"/> 5% 가산대상<br><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 일반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br>응시자는 서류전형평가항목 미기재   |        |

직무관련 정보

| 구분                         | 내용  |
|----------------------------|---|
| 응시<br>직위(분야)               |   |
| 직무에 대한<br>이해<br>및<br>응시 취지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br>조건,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 교육배경

| 구 분                    | 내 용 |      |      |     |     |
|------------------------|-----|------|------|-----|-----|
|                        | 학교명 | 입학년월 | 졸업년월 | 전 공 | 학 위 |
| 학력 및 전공<br>(고등학교 이상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논문, 저술, 價 등            |     |      |      |     |     |

□ 경 력 -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나타난 사항만 기재

| 근무기간 | 근무처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 및 자격

| 구 분            | 내 용 |          |
|----------------|-----|----------|
|                | 자격증 | 종류       |
|                |     |          |
| 어학             | 종류  | 점수 또는 수준 |
|                |     |          |
|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     |          |

## 이력서 작성요령

1. 응시서류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제한·합격 무효 등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 응시서류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 ② 중구 전입일 : 주민등록상 최근 전입일 기준으로 기재(※타지역 주민 미기재)  
(※현재 기준 연속거주한 날짜로 기입하며, 타지역 전출 내역이 있을 경우 이전 중구 거주내역은 기산하지 않음.)
  - ③ 부양가족원 수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구성원 중 만65세 이상의 부모·배우자와 만19세 이하 미성년자녀 수의 합을 기재(응시자 본인 제외)  
※손자녀의 경우, 부모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부양가족 인정
  - ④ 연간소득액 :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상 소득금액(근로소득/종합소득/사업소득) 기준으로 기재
  - ⑤ 저소득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복지급여대상자의 경우 표기
  - ⑥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취업지원·보호 대상자의 경우 증명서상 가점 비율 표기
3. 각 평가항목별 증빙서류 및 발급기관은 아래와 같으며, 모든 증빙서류는 채용공고 최초게시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해 효력을 인정합니다.

| 작성항목       | 확인서류   | 발급방법                                       |
|------------|--|--|
| 중구전입일      | -주민등록 초본(주소변경내역 포함)  | [방문]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
| 부양가족원 수    | -주민등록 등본   | [온라인]정부민원포털 민원24                           |
| 연간 소득액     |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가입용)<br>※소득이 없어 발급불가할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로 대체   | [방문] 세무서, 구청<br>[온라인]국세청 홈택스               |
| 저소득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br>-차상위계층 증명서 (아래 중 한가지)<br>1)한부모가족 증명서<br>2)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br>3)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br>4)자활근로자 확인서<br>5)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br>6)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 [방문]구청 복지급여담당부서, 동주민센터<br>[온라인]정부민원포털 민원24 |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방문]보훈청, 구청, 동주민센터<br>[온라인]정부민원포털 민원24     |

<공고문 별지 제3호 서식>

#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2020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별지 제5호 서식>

##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하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 부여

<공고문 별지 제6호 서식>

# 응시자 이력 및 경력 요약서

<반드시 1장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b>성 명</b> |  | <b>생년월일</b> |  |
|------------|--|-------------|--|

○ **(학력 및 전공)** ※ 고졸 이상 학력 중 응시자가 소개하고 싶은 학력 3건 이내 기재

| 학 교 명 | 전 공 | 학 위 | 입학년월 | 졸업년월 |
|-------|-----|-----|------|------|
|       |     |     |      |      |
|       |     |     |      |      |
|       |     |     |      |      |

○ **(주요 경력)** ※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나타난 경력 중 응시분야와 관련하여 응시자가 소개하고 싶은 근무기간 1년 이상 주요 경력을 3건 이내 기재

| 근 무 처 | 직 위 | 업 무 내 용 | 시작일 | 종료일 | 근무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경력기간: '00.00.00 ~ '00.00.(면접시험일) 기준 / 근무기간은 15일 초과 시 1개월로 인정

○ **(자격증·외국어)** ※ 응시분야와 관련한 자격증, 외국어 능력 기재

| 구 분    | 자격종목    | 자격증번호  | 취득일       | 교부기관 |
|--------|---------|--------|-----------|------|
| 관련 자격증 |         |        |           |      |
|        |         |        |           |      |
| 구 분    | 자격(시험)명 | 등급(점수) | 취득일(유효기간) | 발급기관 |
| 외국어 능력 |         |        |           |      |
|        |         |        |           |      |

○ **(기타 수상, 실적, 능력 등)**

※ 상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수상, 실적,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2020년도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시험 심사기준

| 평 정 요 소              | 평 정 기 준 점 수         | 비 고 |
|----------------------|---------------------|-----|
|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상(3점), 중(2점), 하(1점) |     |
| 나.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응용능력  | 상(3점), 중(2점), 하(1점) |     |
|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상(3점), 중(2점), 하(1점) |     |
|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상(3점), 중(2점), 하(1점) |     |
| 마.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상(3점), 중(2점), 하(1점) |     |
| <b>합 계(* 만점 15점)</b> |                     |     |

※ 5개 평가항목에 대해 각 요소별로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  
[점수편차(변별력)를 위해 0.5점 단위로 평정 가능]

※ 불합격자 결정기준

- 1) 5개 평정요소에 대한 평가위원 전체평균 평정점수가 “중(2점)” 이하인 경우
- 2)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1점)”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를 “하(1점)”로 평정한 경우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975호

##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폐지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  
 구청장(참조 : 치수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 : 02-3396-6143, FAX : 02-3396-885  
 3, 메일 : [aasshh902@junggu.seoul.kr](mailto:aasshh90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976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처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목적(안 제1조)
-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 다.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 라. 위원회의 회의(안 제6조)

###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  
시 중구청장 (참조: 치수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여관동), 문의전화:3396-6143, FAX: 02-3396-8853, 메일: aa  
sshh90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1부. 끝.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사항 등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 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 등(이하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지명 철회 및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 요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